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4.

발 의 자 : 장철민 · 채현일 · 김영환
김한규 · 정준호 · 이재관
박 정 · 박용갑 · 조승래
허 영 · 홍기원 · 김교홍
김태선 · 맹성규 · 황정아
박정현 · 이소영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보 및 운영, 민간시설의 건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대전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,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 전가 및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등 체육

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,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4 신설).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08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4(공공체육시설의 대부계약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은 상호 간 권리·의무, 안전 관리 책임 및 사고 발생 시 손해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체육단체에 일방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08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<u><신 설></u>	법률 제2108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<u>제13조의4(공공체육시설의 대부 계약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은 상호간 권리·의무,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 발생 시 손해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체결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체육단체에 일방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